

「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」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

「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」의 연구개발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(기업포함)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30일

산업통상부장관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

-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(서비스 지원기관)의 인프라(인력·장비 등)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

‘신뢰성’이란?

☞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‘품질’에 ‘시간’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

- * ‘품질’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‘신뢰성’은 일정 시간 후에도 목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



나. 지원방법

-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(온라인 쿠폰)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(서비스 지원기관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

‘신뢰성 바우처’란?

☞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

‘연구개발기관’이란?

☞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에게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(기업)

- * 현재 5대 분야별(금속, 섬유, 화학, 세라믹(전자), 기계(자동차))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정 운영 중

다. 사업기간 : '27. 1. 1. ~ '30. 12. 31. (48개월, 총 4단계: 단계별 1년)

* 협약은 단계별로 체결하며, 매년 정기형 이후 해당 단계 협약을 체결함

** 매 단계 종료 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계속 수행 여부 결정

라. 사업비 규모 : '27년 총 200억원

* 연도별 사업비는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마. 선정규모 : 5개 분야(금속, 화학, 섬유, 세라믹(전자), 기계(자동차))별 각 5개 내외

* 분야별 지원규모가 작을 경우, 선정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** (서비스 지원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

바. 수행내용

○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

*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
지원 세부항목		
신뢰성 향상	신뢰성 평가	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, 환경,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
	고장분석	고장 재현 시험, 고장원인 분석 등
	평가기법 개발	사용조건,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
	물성·성능 분석	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·성능평가 지원(부품·장비분야)
소재 성능 향상	데이터 및 기술정보	소재 물성정보, 소재 기술정보, 신뢰성 규제/기술/표준/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
	가상공학 시뮬레이션	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
	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	개발 소재의 공정/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

* 기업 신청 시, 상기 분야를 중심으로 대/중소 분류 세부 선택

사. 사업내용

구분	정기형	수시형						
신청시기	연 1회	연 2회 내외(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)						
정부지원 연구개발비	<table border="1"> <tr> <td>Track 1</td><td>기술 사업화·국산화</td><td>최대 1.5억</td></tr> <tr> <td>Track 2</td><td>기술 개선·고도화</td><td>최대 1.2억</td></tr> </table>	Track 1	기술 사업화·국산화	최대 1.5억	Track 2	기술 개선·고도화	최대 1.2억	최대 2천만원
Track 1	기술 사업화·국산화	최대 1.5억						
Track 2	기술 개선·고도화	최대 1.2억						
지원내용	핵심기술(국산화·자립화) 신뢰성 경쟁력 중장기 지원	단기(적시) 신뢰성 향상 지원						
신청서류	수행계획서(10p) 등 구비서류	수행계획서(5p) 등 구비서류						
바우처 사용기간	바우처 발급일 ~ 연차 사업종료 1개월 전							
기관부담 연구개발비	총 사업비*의 중소기업 25%, 중견기업 30% * 총 사업비 = 정부지원연구개발비 + 기관부담연구개발비							

* 상기 내용은 기존 공고 사업 내용으로,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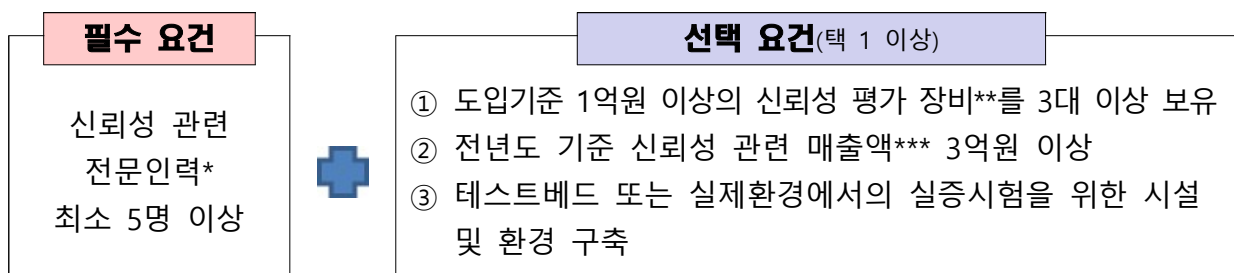
아. 신청유형

구분	주관연구개발기관	공동연구개발기관
지원성격	분야별 주관 및 바우처 서비스 지원	바우처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	사업운영비 + 바우처 예산	바우처 예산
	* 바우처 예산은 기관별 선정기업 지원 규모에 따라 상이함 ** 사업 운영비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름	
수행내용	바우처 서비스 분야별 서비스 역량관리 (교육, 홍보, 실적·성과관리 등)	바우처 서비스
계획서 제출	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(다운로드)	연구개발기관 양식(다운로드)
증빙서류	공통	

*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2.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

- 신뢰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반드시 보유하고, 아래 선택 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업



* '전문인력'이란 신뢰성 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사 이상의 연구인력 또는 상시장비운영 인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

** '신뢰성 평가 장비'란 소재, 부품의 성능평가, 환경평가, 수명 및 내구성 평가, 물질분석, 고장분석, 시뮬레이션, 실증시험 등을 위한 계측, 시험, 분석, 공정 장비

*** '신뢰성 관련 매출액'은 상기 1. 사업개요의 바. 지원내용(서비스)을 모두 포함한 수익금의 규모

-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

- － 「적합성평가관리법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‘25.10)에 의거하여 시험성적서 위·변조, 허위발급 등의 위반사항으로 인한 처벌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 혹은 과징금 대상 기업
- －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－ 연구개발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
3. 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

-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, 적절성 등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**대면평가**(필요시 대면평가)와 **현장확인**(필요시)을 통해 선정
- * 인력, 장비 보유현황, 기업지원 실적 등 신청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,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(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, **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됨**)

<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지표(안) >

구분	평가내용	평가지표	배점
수행역량 (60점)	정부정책과의 부합성	-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및 신산업 분야 지원 가능성 -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추진 목적과 부합성 -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서비스 범위	5
	운영인력의 전문성	-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보유 수준 - 총괄책임자의 역량	15
	구축 장비의 우수성	- 신뢰성평가 전문장비 및 시설, 전용공간 보유 수준 - 장비활용도 및 신규장비 도입·유지관리계획	15
	서비스 역량의 전문성, 차별성	- 핵심 서비스 지원분야 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 - 타 신뢰성 서비스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지원 분야 차별성 (최근 3년 이내 신규 서비스 수행 및 차별화 정도 등)	15
	기업지원역량 의 우수성	- 전년도 신뢰성평가 관련 기업지원 실적 (기업수, 실적건수, 주요성과) - 전년도 매출 규모 및 서비스 지원 분야 등 기업수요	10
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(40점)	사업운영 체계의 적절성	-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의지 - 연구개발기관간 연계협력방안 - 사업수행절차 이행 문제해결 노력 - 시험인증 공인기관 여부 및 획득 노력 - 서비스 기업 대상 고객관리체계 (서비스 및 지원기업 관리 등)	15
	서비스단가의 적정성	- 서비스별 가격 현황 - 서비스 단가 산출의 타당성 - 서비스 단가 금액의 적정성	10
	주관연구개발 기관 수행 적절성	-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-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계 서비스 역량 관리 및 성과제고 노력	15
합 계			100

< 연구개발기관 평가지표(안) >

구분	평가내용	평가지표	배점
수행역량 (65점)	정부정책과의 부합성	-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및 신산업 분야 지원 가능성 -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추진 목적과 부합성 -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서비스 범위	10
	운영인력의 전문성	-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보유 수준 - 총괄책임자의 역량	15
	구축 장비의 우수성	- 신뢰성평가 전문장비 및 시설, 전용공간 보유 수준 - 장비활용도 및 신규장비 도입·유지관리계획	20
	서비스 역량의 전문성, 차별성	- 핵심 서비스 지원분야 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 - 타 신뢰성 서비스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지원 분야 차별성 (최근 3년 이내 신규 서비스 수행 및 차별화 정도 등)	15
	기업지원역량 의 우수성	- 전년도 신뢰성평가 관련 기업지원 실적 (기업수, 실적건수, 주요성과) - 전년도 매출 규모 및 서비스 지원 분야 등 기업수요	10
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(35점)	사업운영 체계의 적절성	-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의지 - 서비스 연구개발기관간 연계협력방안 - 사업수행절차 이행 문제해결 노력 - 시험인증 공인기관 여부 및 획득 노력 - 서비스 기업 대상 고객관리체계 (서비스 및 지원기업 관리 등)	20
	서비스단가의 적정성	- 서비스별 가격 현황 - 서비스 단가 산출의 타당성 - 서비스 단가 금액의 적정성	10
합 계			100

4. 추진절차 및 일정

구분	추진내용	추진기관	추진일정
연구개발기관 선정	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↓	한국산업기술진흥원	'26. 9. 30.
	연구개발기관 신청서 접수 ↓	연구개발기관 → 한국산업기술진흥원	~'26. 10. 23.
	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↓	평가위원회 (한국산업기술진흥원)	'26. 11월
	연구개발기관 확정 ↓	산업통상부 → 한국산업기술진흥원	'26. 11월 말
참여기업 선정	참여기업 모집 시행계획 공고	산업통상부	'27. 1월
	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↓	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 (신뢰성바우처.org)	'27. 2월
	참여기업 선정평가 ↓	평가위원회 (한국산업기술진흥원)	'27. 3월 중
	협약 체결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주관연구개발기관	'27. 3월 중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5. 신청방법

가. 접수 및 문의처

- 접수기간 : 2026. 9. 30.(수) ~ 2026. 10. 23.(금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접수 (신뢰성바우처.org)

나.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

구분	전문기관	☎ 문의처
사업 관련 문의	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기반실	(02) 6009-3935, 3922
온라인 전산 문의	한국산업기술진흥원	(02) 6009-4305

다. 구비서류

No	서식명	비고	제출방식
1	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신청서 - 주관연구개발기관(서식 제1호) - 공동연구개발기관(서식 제3호)	필수	시스템 입력 (신뢰성바우처.org)
2	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수행계획서 - 주관연구개발기관(서식 제2호) - 공동연구개발기관(서식 제4호)	필수	전자문서(PDF) 업로드
3	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(서식 제5호)	필수	
	- 전문 인력 보유 현황	필수	
	- 신뢰성 평가 관련 매출액 현황	택 1	
	- 1억 이상 장비 보유 현황		
	- 테스트베드, 실증시험시설 구축현황		
4	서비스 이용료 단가표(서식 제6호)	필수	
5	전문 서비스 분야 운영 프로세스(서식 제7호)	필수	
6	공인시험기관 인정서	필수	

6. 근거법령 및 규정

가. 근거법령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

나. 관련규정 :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 관리지침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

7. 기타사항

- 본 사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
- 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2호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과제 해당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 및 기관에게 있음

